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7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최근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679호, 2023. 8. 16. 개정, 2024. 2. 17. 시행) 개정에 따라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, 「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」(2023. 2. 23. 발표) 후속조치로서 코로나-19 등을 계기로 도심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,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수요,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(제14조제4항)

일반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,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에 주문배송시설의 경우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주문배송시설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함.

##### 나.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(령 별표 1 제4호)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 용도를 신설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건축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“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
- 전화 : 044-201-3757 / 팩스 : 044-201-5574